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

제정 2009.04.25

개정 2022.06.10

개정 2024.03.2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하나자산운용(주)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다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바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2. 수수료

- 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가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를 받는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 재산 또는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③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(성과보수의 제한), 법 시행령 제88조(성과보수의 제한)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(성과보수의 제한)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계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6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는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 ①회사가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·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및 그 부과방법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상품개발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기존 상품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등 상품개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간의 합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③위원회가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⑤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⑥제5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

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⑦회사는 각 집합투자계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(수수료의 인상) ①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,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설명의무)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그 밖의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투자광고)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,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,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시 및 통보) 회사가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제정 및 개정한다.

부 칙(2009.4.25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, 투자자문, 투자일임 등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2.06.10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4.01)

제1조(시행일) 종전의 「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」을 개정한 이 규정을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